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3148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현

변 론 종 결 2024. 8. 14.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2. 4. 1. 체결한 재산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4. 1. 접수 제481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1. 체결한 재산분할 약정1) 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4. 1. 접수 제481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5387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0. 7.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382,172원 및 그중 112,5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2021.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이 항소하였으나 2022. 8. 2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1심 판결이 2022. 9. 1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C과 피고는 1977. 9. 8. 혼인신고를 마쳤고, 2021. 12. 2.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C은 1998. 9. 20.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1. 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에게 2022. 4. 1.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4. 1. 접수 제48186호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으로 선행한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15. 2. 2. D의 E에 대한 차용금

채무(변제기 2015. 4. 30.)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2019. 6. 20. E으로부터 위 차용금 채권을

양수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인 2022. 4. 1. 이미 C에 대하여 위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를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2022. 9. 14.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C의 무자력 여부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약 1억 6,000만 원 가량의 이 사건 빌라와 소액의 예금이 있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원리금 약 1억 5,000여 만 원2),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여금 채무 3,000만 원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증여 등 법률행위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수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C은 약 44년간 혼인생활을 하여 왔던 점, ② 이 사건 빌라는 피고와 C이 1999. 4.경부터 약 2021년까지 혼인생활을 함께 하였던 거주지로,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는 혼인생활 중 이룩한 유일한 공동재산으로 보이는 점, ③ C은 1952년생으로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별다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거액의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음에도, 유일한 공동재산인 이 사건 빌라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점, ④ 이 사건 빌라에는 C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여전히 C이 부담하고 있는 점, ⑤ C과 피고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이 사건 선행판결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의 자녀 중 한 사람은 'C이 혼자 문제를 만들었는데 심각한 상황이라 해결방안이 없어 이혼을 권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빌라 중 1/2 지분을 초과하여 이전한 부분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빌라는 명의만 C으로 되어 있었을 뿐 피고가 마련한 피고 소유의 재산이고, 재산분할 외에 혼인생활기간 동안의 폭행,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빌라 전부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 이 사건 빌라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벗어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이 사건 빌라의 1/2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빌라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여진

별지

- 1) 원고는 소장에는 ‘2023. 4. 1. 체결한 재산분할’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는 ‘2023. 4. 1.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고 청구취지란에 기재하였으나, 각 청구원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2022. 4. 1. 재산분할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
- 2)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2022. 4. 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 원리금 합계 총 155,218,815원이 된다.